

이루다투자일임 「비대면투자일임계약서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약관 전체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</p>	<p>약관 전체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`</p>	<p>사명 변경</p>
<p>제7조(투자일임수수료) ①~③ (생략)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</p>	<p>제7조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2021 공정위 시정요청사항 반영</p>
<p>제18조(계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~2 (생략) 3.<신설></p>	<p>제18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3. 고객이 투자일임 대상 계좌의 회사에 대한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. ③ 제7조의 투자일임수수료가 <별지>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납부시기까지 미납될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다음 각 호 내용을 통지하고, 최고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투자일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최고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. 1. 투자일임수수료 미납 사실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2.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투자일임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.</p>	<p>세부계약조건인 내용 본문 편입 (고객이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투자일임업무 수행 불가능) ③ 투자일임수수료 미납시 회사의 해지 권한 추가</p>
<p><별지> 세부계약조건 7. 투자일임수수료 <신설> 10. 기타 특약사항 ◆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법정이율로 합니다. ◆ 고객이 대상 계좌의 회사에 대한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별지> 세부계약조건 7. 투자일임수수료 ◆ 수수료의 납부시기 10. 기타 특약사항 ◆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 9.9%로 합니다. ◆ 조문이동 (제18조제2항제3호)</p>	<p>연체이자율 결정 약관 본문에 편입</p>

